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35
----------	-------

발의연월일 : 2025. 7. 17.

발 의 자 : 백혜련 · 김기표 · 박지원
김영환 · 남인순 · 서영석
이수진 · 조계원 · 민병덕
김한규 · 박희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한국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로 주거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기존의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전단 중 “다자녀 가구”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이하 “미성년 자녀 가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다자녀”를 “미성년 자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1.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
2.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

공주택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생략)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과 <u>다자녀 가구</u> 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u>다자녀</u>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 ----- <u>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u> (이하 “ <u>미성년 자녀 가구</u> ”라 한다)----- ----- ----- <u>미성년 자녀</u> ----- ----- -----.
<신 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u>미성년 자녀</u>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1. <u>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u> : <u>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u> 2. <u>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u> : <u>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u>